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10. 16(일) 총 5매(본문3, 붙임2)	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기술과	담 당 자	·과장 정의경, 사무관 박성현 ☎ (044)201-3850
	대중교통과	담 당 자	·과장 김헌정, 사무관 문기성 ☎ (044)201-3832
	도로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강희업, 사무관 이윤우 ☎ (044)201-3881
보 도 일 시		2016년 10월 1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6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전세버스 화재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시행

- 사업용차량 안전대책 후속 진행상황 및 추가조치 마련 -

-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(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), 비상자동제동장치(AEBS)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,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‘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’을 지난 7.27일에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- 금번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.
- 우선, ‘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(7.27일 발표)’의 일환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*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(박맹우 의원 대표발의)되었으며,
 - * (현행)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위반 → (개정)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
-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,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□ 또한,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·고속,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, 비상망치·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·청각자료를 제작,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*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(10.4~11.12일)이며, '17년 1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,

*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: 사업 일부정지(30일~90일) 또는 과징금 180만원

○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가 모든 시외·고속, 전세버스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·배포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을 버스연합회, 전세버스조합 등 버스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.

○ 또한, 지자체, 버스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시 소화기·비상망치 사용법,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지자체 및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 점검을 실시하고,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.

○ 이와는 별도로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,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하고,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한다.

□ 둘째,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,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*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(현재 법제처 심사 중)하고 있으며,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.

* 면적 0.45㎡ 이상, 크기 60cm × 70cm 이상(30인승 미만 1개, 30인승 이상 2개)

- 참고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에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에 폭 40cm, 높이 120cm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다만, 일정규격* 이상으로 총면적이 2m²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하여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(비상망치)를 차실 내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.

* 폭 40cm·높이 120cm 이상 또는 폭 70cm·높이 50cm 이상 또는 폭 35cm·높이 155cm 이상 또는 폭 50cm·높이 70cm 이상

- 이와 병행하여,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~영천 구간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,
- 안전한 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·설치하고,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

 <small>공공누리 3종(인격권) 자유이용허락</small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박성현 사무관(☎ 044-201-3850),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 (☎ 044-201-3832), 도로정책과 이윤우 사무관(☎ 044-201-38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

참고1

버스차량 내 비상해치 설치 예시



<상부 비상해치 예시>



<하부 비상해치 예시>

참고2

비상망치 형광테이프 부착 전후 비교

<형광테이프 부착 전>



<형광테이프 부착 후>

